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5일, 남인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남인순 의원)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

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재난이나 사고 사황의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그 설치·운영이 위임되어 있음.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로서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연구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와 방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는 필요해 보임.

또한, 장기추적 조사에 관한 유사한 입법례에 따르면, 장기추적의 결과 보호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개정안에서도 장기추적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와 시스템 간 연계, 전문인력의 채용과 조직 및 하위 법령 정비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